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20090100314

www.beansbins.com/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2009.06.30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2023.9.

ghjang@beansbins.com

[빈스빈스]

정 보 공 개 서

[(주)빈스앤로스터리코리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빈스앤로스터리코리아]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서울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중구 명동8나길(충무로1가 23-1)]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2-412-7250]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2-412-7211]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경영지원팀 : 02-412-7250]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빈스앤로 스터리코리아	빈스빈스	서울시 중구 명동8나길 10, 2층(충무로1가,사보이호텔)			
	법인 설립등기일 ^①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6.1.4	2006.2.20	김기환	02-412-7250	02-412-7211
	법인등록번호	110111-3372482	사업자등록번호	101-86-20389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①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대표)	(주)빈스앤로 스터리코리아/ 김기환	빈스빈스	서울시 중구 명동8나길 10, 2층(충무로1가,사보이호텔)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2006. 01 ~ 현재	김기환	02-412-7250
사용인 (임원)	(주)빈스앤로 스터리코리아/ 김현호	빈스빈스	서울시 중구 명동8나길 10, 2층(충무로1가,사보이호텔)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2006. 01 ~ 현재	김기환	02-412-7250
사용인 (임원)	(주)빈스앤로 스터리코리아/ 최은영	빈스빈스	서울시 중구 명동8나길 10, 2층(충무로1가,사보이호텔)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2012. 01 ~ 현재	김기환	02-412-7250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주)빈스엔로 스터리코리아/ 장기혁	빈스빈스	서울시 중구 명동8나길 10, 2층(충무로1가,사보이 호텔)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2. 01 ~ 현재		김기환	02-412-7250	02-412-7211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 기재기간: 최근 3년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빈스빈스]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①	빈스빈스	커피와 통을 의미
상 호 ^②	빈스빈스 OO점	
상표(서비스표) ^③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1719350000
광 고 ^④		
그 밖의 영업표지		

5. 최근 3개 사업연도^①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연도	총자산 ^②	총자본	총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2,364,703	-351,820	2,716,523	701,096	-328,816	-352,755
2022년	2,330,893	-514,339	2,330,893	831,013	-261,771	-162,519
2023년	2,367,470	-784,179	3,151,649	1,298,562	-205,519	-269,839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① 명단 및 사업경력^②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③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④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기환	대표	2006.01~2011.12.31	(주)빈스앤로스터리 코리아 감사	감사
			2012.01~현재	(주)빈스앤로스터리 코리아 대표이사	총괄
	김현호	이사	2006.01~현재	(주)빈스앤로스터리 코리아 이사	생산 및 물류지원
	장기혁	이사	2012.01~현재	(주)빈스앤로스터리 코리아 이사	경영지원
	최은영	감사	2012.01~현재	(주)빈스앤로스터리 코리아 감사	감사일반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①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3	1	16

[※ 사업연도가 연도 말이 아닌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해당사항 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①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 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예시) 특허권	빈스빈스커피 서비스표등록	제 41-0171935-0000호	(주)빈스앤로스 터리코리아	2028.08.05
상표권	빈스빈스커피	제 40-0715805-0000호		2027.07.03
기타	상표등록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빈스빈스] 가맹사업 현황

1. [빈스빈스] 을 시작한 날: 2007년 7월 1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06년 2월 20일)

2. [빈스빈스]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빈스앤로스 터리코리아	빈스빈스	김현환	2006.06.20~2011.12.31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62-26
(주)빈스앤로스 터리코리아	빈스빈스	김기환	2012.01.01~현재	서울시 중구 명동8나길10

3. [빈스빈스] 업종

영업표지	업종	
빈스빈스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커피	커피,와플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빈스빈스]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24	21	3	20	17	3	15	12	3
서울	8	5	3	6	3	3	5	2	3
부산	1	1	-	1	1	-	1	1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10	10	-	8	8	-	5	5	-
강원	1	1	-	1	1	-	1	1	-
충북	-	-	-	-	-	-	-	-	-
충남	2	2	-	2	2	-	1	1	-
전북	-	-	-	-	-	-	-	-	-
전남	1	1	-	1	1	-	1	1	-
경북	1	1	-	1	1	-	1	1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빈스빈스]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①	계약 해지 ^②	명의 변경 ^③	연말
2021	24	1	4	-	1	21
2022	21	1	5	-	-	17
2023	17	-	1	4	-	12

[빈스빈스]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④

6. [빈스빈스]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①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②

[빈스빈스]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③.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④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평균 매출액						비고 ^⑤
		매출액(평균)		상한(최고)		하한(최하)		
		연간 평균 매출액 ^⑨	면적 3.3m ² 당	상한 ^⑩	면적 3.3m ² 당 ^⑪	하한 ^⑫	면적 3.3m ² 당 ^⑬	
전체 ^⑥	12	128,741	3,018	256,177	5,558	47,419	1,024	
서울	2	해당없음						5곳미만
부산	1	해당없음						5곳미만
대구	-	해당없음						5곳미만
인천	-	해당없음						5곳미만
광주	-	해당없음						
대전	-	해당없음						
울산	-	해당없음						
세종	-	해당없음						
경기	5	133,487	2,864	256,177	3,941	64,496	1,024	
강원	1	해당없음						5곳미만
충북	-	해당없음						
충남	1	해당없음						5곳미만
전북	-	해당없음						
전남	1	해당없음						5곳미만
경북	1	해당없음						5곳미만
경남	-	해당없음						
제주	-	해당없음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총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2023년도 중간에 영업을 개시한 가맹점의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으로 산입하였습니다. 따라서 표에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의 실제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로서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별 가맹점이 5개 미만지역은 평균매출액 산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8. 빈스빈스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빈스빈스]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 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2	3790일(10년4월)

①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가맹점 수를 기준

②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가맹점의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한 일수를 모두 더하여 직전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가맹점 수로 나눈 시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①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빈스빈스]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①	수단 ^②	기간 ^③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④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877	877	-	
광고	소계					
	비공개	비공개	877	877		비공개
	비공개					
판촉	소계				-	
	비공개				-	

11. 가맹금 예치

<해당사항 없음>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등을 통보 받은 적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빈스빈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매장 판매 상품·제품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오픈 후 7일 이내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오픈 후 7일 이내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①	금액 ^②	지급 기한	반환조건 ^③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5,000]				
가맹금	5,000	오픈후 일주일 이내		교육 및 개설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①	금액 ^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③	비고
총계	[5,000]			
물품보증금	5,000	오픈후 일주일 이내	물품대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계약만료후 환불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해당사항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①	지급대상 ^②	금액 ^③	면적 33m ² 당 금액 ^④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⑤
총계		49,000~60,000				
필수설비(정착물)	협력업체	20,000	2,000	설치 7일 전	설치 전 계약취소	기준평수 10평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주)빈스앤로스터 리코리아	20,000(보통형) 30,000(고급형)	2,000(보통형) 3,000(고급형)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이후	공사 전 계약취소	10평 기준
최초 공급 상품 비용	(주)빈스앤로스터 리코리아	4,000~5,000		물품 공급 1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주)빈스앤로스터 리코리아	5,0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개점전 계약취소 (그간 소요비용 제외)	인테리어소모품 비, 사업자등록 등 대행 대가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 m² 기준으로 평균 3,000천원을 공사 7일전에는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①	선정 기준 ^②
당사 (전화:02-412-7250)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①	계약·채용 기준 ^②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빈스빈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8) 한편, 가맹금은 귀하가 당사에 오픈후 7일 이내에 일시지급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오픈 후, 가맹 본부의 대표자와 상의하여 조정,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잔금
금액(천원)	5,000	총액의 50%	총액의 50%
납부일		계약일	계약일+ 1월이내
비고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①	지급대상 ^②	금액 ^③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④
총계						
상표사용료		해당없음				
리스료		해당없음				
광고부담료		분담기준에 의거				
교육훈련비	빈스앤로스 터리코리아	385	교육시작 3일 전			직원(1인) 교육신청시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리모델링 비용		해당없음				
점포환경개선 비용		점주 자율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해당없음				
지연이자 ^⑥	빈스앤로스 터리코리아	연19%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			월 납부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로열티	빈스앤로스 터리코리아	아래참조			월 사용료	평수마다 차이가 있음

로열티 (단위:천원,부가세포함)

30평 이하(99㎡)	250
30평 이상(100㎡)	400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SV를 통해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시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단, 당사에 제공되어야 할 로열티등의 할인이나 면제가 적용된 경우 원상회복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 정산 잔액과 정산서를 받은 때로부터 (정산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받은 때로부터), 즉시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간판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여 원상 복구한다.

나) 가맹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자가, 가맹 본부의 귀책 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한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귀하가 [빈스빈스]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①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빈스빈스]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없으며 경제적 이익도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당사는 [빈스빈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당사가 [빈스빈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 커피원두류 - 차류 - 와플류	- 품질 관리 기준을 3개월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상품, 자재의 공급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은 경우 - 노후된 점포 설비의 교체, 보수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종업원이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상품고객에 대해서 특별한 판매 제한이 없습니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조문(별표2 제2호 구속조건부 거래 다목)

다.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2)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①	권장가격(단위:원) ^②	가격 통보방법	비고 ^③
커피류	4,400~6,500(13OZ)	사내게시판에 공지	2023.12월 기준
차류	4,800~5,500(13OZ)	“	“
와플류	6,900~18,500	“	“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

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①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②	
	가맹본부	계열회사
커피음료 및 와플류를 판매하는 가맹사업	빈스빈스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①	설정방법 ^②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기준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빈스빈스’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빈스빈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6) 가맹점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신설)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

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3	100%	0%	0%	0%

① 매출액 비중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하며,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해당 채널의 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② 기타 온라인 매출액이란 가맹본부가 자사 온라인몰을 제외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과 온라인 채널에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3	0%	0%

① 오프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가맹점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② 온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가맹본부가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온라인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빈스빈스]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재계약, 갱신시는 매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의 1(가맹계약 갱신거절 사유 등)

‘갑’은 ‘을’이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을’이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을’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을’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을’이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제5조의 1 제3항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가. ‘갑’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나. ‘갑’이 ‘을’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을’이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갑’이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 【계약의 해지】

1. ‘갑’ 또는 ‘을’은 다음의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고 그 이행 또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이상 서면으로 통지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을’이 제 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6항, 제23조 제1항 각호, 제28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2) ‘을’이 제14조 제8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 3) ‘갑’의 영업 방침 및 운영 규칙에 위배하여 그 시정을 요구 받아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을’이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 4)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을’이 ‘갑’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갑’ ‘을’ 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신뢰를 훼손케 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5) ‘을’이 제28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곳에 기밀을 누설했을 경우
 - 6) ‘을’이 본 계약서상의 제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하여 본사에서 2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행하지 않은 경우
 - 7) ‘갑’이 약정한 상품자재의 공급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2. ‘갑’ 또는 ‘을’은 다음의 경우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을’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을’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을’ 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

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을’이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갑’이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을’이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없음

6)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빈스빈스는 계약 기간 중 계약 수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가맹점 운영권을 환매, 양도할 경우 본사가 우선적으로 매입합니다.

가맹점 운영권을 상속 및 대리할 경우 본사와 협의한 후 진행합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①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②	양도 절차 ^③	비고 ^④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가맹금 및 물품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①	가능 여부(조건) ^②	이전 범위 ^③	절차 ^④	기타 의무사항 ^⑤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해당사항없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빈스빈스]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주 5일 근무, 일일 8시간의 근무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 본부의 동의 없이 연속하여 5일 이상 휴업을 할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①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②	대체 가능 인력 ^③	비고 ^④
2명 이상	상관없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빈스빈스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①	광고성격 ^②	부담비율		분담 절차 ^④	비고 ^⑤
		본사부담 ^③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 광고	광고비의 50%	전 가맹자들이 50% 부담	별도 절차 없음	광고목적에 따라 분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 광고 + 가맹점 모집 광고	광고비의 50%	전 가맹자들이 50% 부담		
	가맹점 모집 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 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 후 최종 부담금 확정	월별 판촉행사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비밀은 한국특허정보원의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해당사항이 있

는 경우 기재합니다.]

11. 손해배상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약 65일 정도 소요)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내외	18~23쪽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응대	즉시	
가맹사업에 대한 설명 및 상담	-담당자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즉시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의사결정, 1차 시장조사 -입지 지역분석 및 확정	필요시 실시	
점포실측/설계	-투자비 산출	3일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3일	
최종협의	-가맹점 개설 승인여부 확인 -가맹계약서 제공	계약체결 14일전	
가맹 계약	-가맹 계약 체결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정보공개 서 제공후 14일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 실시	30일	
교육실시	-점포운영교육 실시	7일	
가맹점 오픈	-가맹점 오픈 및 영업개시	즉시	
가맹금 등 지급	-가맹금 입금	오픈 후 7일 이내	5,500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③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서울시도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02-3445-9898,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한 점포환경개선을 일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①	주요 내용 ^②	지원조건 ^③	지원기간	지원금액 ^④	비고 ^⑤
개점행사비	가맹점 오픈시 관측인원 파견 및 전단지, 기념품 등의 관측비용 지원	가맹점의 매장면적, 예상매출액에 따라 관측인원 수 및 관측비용 차등 지원	오픈일로부터 3일이내	100만원 한도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①	절 차 ^②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운영지원팀 (02-412-7250)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운영지원팀 (02-412-7250)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빈스빈스]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신용명 또는 내용 ^①	신용제공자 ^②	금액 ^③	신용 형태 ^④	신용제공 조건 ^⑤
프랜차이즈 우대신용 대출	외환하나은행	최대 1억원	신용대출	가맹본부 확인, 일정신용등급 이상 대출제공

[구체적인 신용제공 조건은 귀하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 지원을 원하는 경우 02-412-7250으로 상담하기 바랍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①	주요 내용 ^②	지원조건 ^③	지원기간	지원내용 ^④	비고 ^⑤
매출부진 경영지원	매출부진 가맹점을 위한 경영지원	매출액이 12백만원 이하인 경우	오픈일로부터 1년 이내	로열티 감액/면제	30평 기준

-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를 작성하되 최대한 자세히 구분하고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항목을 조정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지원하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다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 ③ 지원조건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고,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내용도 함께 기재합니다.
- ④ 지원내용이 정액금액인 경우 그 금액을, 정률금액인 경우 그 기준을 기재하되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치임을 알 수 있도록 상한선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표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지원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⑤ 그 밖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가맹본부가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합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빈스빈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빈스빈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1인당)	비고
신규 교육	5일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1~5일	385	신메뉴 및 보수 교육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1조에 따라 점포 근무자로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① 운영 현황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신한은행본점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길 20
2	서울	명동점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3-1
3	서울	HSBC본점	서울시 중구 칠패로 37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②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0년 5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③
340,298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매출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기재합니다. 매출액 산정근거 자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가세 부분(10%)은 제외하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 중인 모든 직영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 ②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 중인 모든 직영점의 최초 영업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일수를 모두 더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직영점 수로 나눈 기간을 의미하며, 이를 연 및 개월 단위로 환산하여 기재합니다.
- ③ 연간 평균 매출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였는지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내부 자료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연간 평균 매출액은 보다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직영점이 실제 영업한 개월수가 6개월 이상이면 1년치로 환산하여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자료에 포함시키고, 직영점의 영업 개월수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직영점의 매출액은 매출액 산정자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